

심 사 보 고

1997. 3. 18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1997년 3월 6일

○ 회부일자 : 1997년 3월 6일

다. 상정일자 : 제13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 (1997. 3.13) 상정
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 (보건환경국장 조규린)

가. 제안이유

-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
-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
-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 기관·단체의 임직원,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

나. 주요 골자

- 구 성 : 위원장 포함 20인 이내, 임기4년
(위원장 : 행정부지사, 부위원장 : 보건환경국장)
- 기 능 : 도지사의 자문기관
 -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
 - 기타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

- 회 의 - 도지사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
 -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의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
- 의견청취 : 필요시 관련기관·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청취 또는 자료제출 요청

3. 검토보고 (교육사회 전문위원 김영만)

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(안)을 검토한 바,
본 조례(안)은

-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
-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
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
-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것으로
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 의결 (참석 7명, 찬성 7명)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(안)